



◆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개정

금융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져야

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.

종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계약체결 전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고,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될 경우도 통지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일부 내용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(2011. 11. 14. 개정)의 개정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.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△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△ 고객이 변경사항 신고할 때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△ 약관 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,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.

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△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함 △ 고객 요청 시 ‘2주 이내에’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함 △ 사고신고의 효력이 ‘신고 후 즉시’ 발생하도록 함 △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함 △ 약관 변경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,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.

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(전국은행연합회)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, 금융당국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보해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도 이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·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의 향상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. (끝)